법인 업무현황

2016. 1.

사단(재단)법인 0000

1. 법인	명 : 사단(재단)법	인 000)				
	(허가번호	: 00	OO, 허가잍	<u>l</u> : .		. 설립	등기일 :)
2. 일반	현황							
3 1		사무소					전화 ()	-
대표자		소재지	(홈페이지:)	팩스 ()	-
회원		임원	이사: O명	임원	0]	 사: O명	상 근	임원: O명
총수	O명(社)	정수	감사: O명	현원	김	사: O명	임직원 수	직원: O명
기본	000	D 외 OC) 종,	운영(보통	॒ हे)	(000 외 00	종,
재산	금액	: 000	천원	재산		Ī	금액 : 000	천원
※ 법인]사무 담당>	아(작성기	사) ※ 본 보	고자료 직	はオ	아		
o 이름	: OOO 사 ^ュ	무실 전화	000-0000) 휴대폰 :	: 00	00-000	e-mail : C	0000
※ 재산	의 경우는 「	10. 재산	목록」에 있	는 재산을	통	합한 대표	항목과 금의	d을 기재
※ '임원	l'은 정관상	임원에	해당					
3. 설립	목적 (※	정관이	나 설립 취지	서 등에 기	기재.	되어 있는	· 내용을 기	재)
4. 목적	사업 (※	정관상여	에 기재되어	있는 내용	을	기재)		

5. 3개년간 법인의 연간 총 예산

구분	2014년	2015년	2016년
금액(단위 : 천원)			

※ 총 예산은 사업예산을 포함하여 법인의 년간 운영을 위한 소요 총액을 기재

6. 법인내 주요 변동 사항

변동사항 ¹⁾	변동일자 ²⁾	변동 전	변동 후	비 고 ³⁾

※ 1) 변동사항: 임원변동, 사무소 이전, 정관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을 기재

2) 변동일자: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일자(임원 변동), 등기일자(사무소 이전), 방통위 허가일자(정관변경)

3) 비 고 : 관련 문서의 문서번호 등 기재

7. 조직 및 인력 현황

1) 임원 현황

직위 (상근여부)	성명	임기시작일 ~종료일 (O년)	학력	주 요 경 력
대표이사 (상근)	홍길동	2012.10.20 ~2014.10.19 (2년)	※ 고교부터 기재하고 주요 학력 3개 기재	※ 주요경력 3개 기재(前, 現을 구분)

※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으로 작성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

2) 상근인력 현황

임 원	직원(정규직)	직원(계약직)	계
O명	O명	О명	총 OO명

3) 조직현황

o 조직체계 : O실 O팀(과)

8.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
가. 사업계획

1) 목표

O

O

2) 총괄표

순	사 업 명		정부 보조(지원)금 내역 ※ 정부지원사업만 추가 기재		비고
번	^) [현 경	(단위:천원)	금액 (단위:천원)	지원부처	H1-1/-
1					
2					
3					
	합계				

- ※ 학회 등의 경우는 세미나, 발표회, 컨퍼런스 등의 행사도 사업으로 기재하고, 정부 예산 지원이 일부 또는 전부 있는 경우 '정부보조금 내역'에 기재할 것
- 3) 세부 사업내용 (※ 총괄표에 있는 사업을 개별건으로 작성)

가) (제1 사업명)

- o 사업예산 : OOO 천원
 - 인건비(산출내역 포함) :
 - 운영비(산출내역 포함) :
 - 기 타(산출내역 포함):
- o 사업목적 및 필요성:
- o 사업내용
 - 사업개요 :
 - 시행시기 :
 - 시행방법:
- o 기대효과(수혜대상 등):
- o 기타사항

나) (제2 사업명)

- o 사업예산 : OOO천원
 - 인건비(산출내역 포함):
 - 운영비(산출내역 포함):
 - 기 타(산출내역 포함):
- o 사업목적 및 필요성:
- o 사업내용
 - 사업개요 :
 - 시행시기:
 - 시행방법:
- o 기대효과(수혜대상 등):
- o 기타사항

나. 수지예산서

(단위: 천원, %)

	수입					ス	출		
항목	2016년 금액 (A)	2015년 금액 (B)	중감 (A-B)	비율 (A <i>/</i> C)	항목	2016년 금액 (A)	2015년 금액 (B)	증감 (A-B)	비율 (A <i>J</i> C)
합 계(C)					합 계(0	C)			

※ 작성 요령

- 1. 수입 및 지출에 대해 항목(ex. 회비, 출연금, 인건비, 운영비, 사무비, 기타)별로 자세히 구분하여 기재, 「9. 나. 수지결산서」의 수입·지출 항목 참고
- 2. 연간 전체 예산에 대해 수입액 및 지출액을 금년도 및 전년도로 비교하고, 총액 기준으로 비율을 함께 기재

9. 2015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
가. 사업실적

1) 총괄표

순		사업예산	사업 시행일	정부 보조(지원)금 내역		비고
번			또는 사업기간	금액 (단위:천원)	지원부처	n1 <u>17</u>
1						
2						
3						
	합 계					

- ※ 학회 등의 경우는 세미나, 발표회, 컨퍼런스 등의 행사도 사업으로 기재하고, 정부 예산이 일부 또는 전부 있는 경우 '정부보조금 내역'에 기재할 것
- 2) 세부 사업내용 (※ 총괄표에 있는 사업을 개별건으로 작성)

가) (제1 사업명)

- o 사업예산 : OOO 천원
 - 인건비(산출내역 포함):
 - 운영비(산출내역 포함):
 - 기 타(산출내역 포함):
- o 사업목적 및 필요성 :
- o 사업내용
 - 사업개요 :
 - 시행시기 :
 - 시행방법:
- o 기대효과(수혜대상 등):
- o 기타사항

나. 수지결산서

1)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	수 입		지 출			
	항 목	금액		금액		
①회 비				인건비		
			①경상비 (법인운영)	운영비		
②출연금			(123)	소 계		
	소 계		②퇴직적립]금		
 ③목적사'	업 수입금		③법 인 서]		
			④목적 기의기			
수입			사업비	 소 계		
	소 계		(5)7) -	본재산 편입액		
	목적사업준비금			목적사업준비금		
 ⑤전기	이월잉여금			이월잉여금		
이월액	기 타		⑥차기 이월액	기타		
	소 계		127			
⑥법인세 환급액				소 계		
	⑦기타			⑦기타		
	합 계			합계		

※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,

[수입]

- ③ 목적사업 수입금 :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또는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기재
- ④ 기타수입: 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①~③을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
- ⑤ 전기이월액
 - 목적사업준비금 : 법인의 목적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미사용액을 기재
 - 이월 잉여금 : 전년도 이월액 중 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
- ⑥ 법인세환급액 :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

[지 출]

① 경상비

- 인건비 : 상근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기재

- 운영비 :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

② 퇴직적립금 : 상근 임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액 기재

③ 법인세 : 출연재산 및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된 법인세액 기재

④ 목적사업비 :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,

「9. 가. 사업실적-총괄표」합계액과 일치

⑥ 차기이월액 : 수입의 전기이월액 항목 설명을 참조

2) 대차대조표

(단위 : 천원)

자		산	부 채	및 자	본
*L 모	금 액		항목	금 액	
항목	2015년	2014년	४ न	2015년	2014년
합 계			합 계		

3) 손익계산서

(단위: 천원)

別		용	수	익	
항목	금 액		항목	금 액	
84	2015년	2014년	84	2015년	2014년
합 계			합 계		

10. 재산목록 (※ 2015년말 기준으로 작성)

※ 작성요령

- 1. 모든 법인은 총괄표를 기준으로 작성
 - 관련 법규(규정) 또는 법인의 내부 정관상에 재산목록을 기본재산 및 운영(보통) 재산으로 구분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는 기본재산에 전부 기재하여도 무방
- 2. 재단법인의 경우는 기본재산과 운영(보통)재산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
- 기본재산: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,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, 운영(보통)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, 회계연도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을 말함
- 운영(보통)재산 :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(비품, 차량 등 포함)을 말함
- 3. **공익법인의 경우**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여부를 떠나 **반드시 기본재산과**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
 -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상기 2호의 기본재산과 같으며, 그 외는 보통재산으로 구분
 - 다만, **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회비**,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반드 시 포함하여야 함
 - ※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(설립허가 기준)에 기본재산에 대해 명시
- 4. **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함은**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(대지, 건물, 임야 등) 또는 재산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(현금, 전세보증금)으로,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함

5. 기타

- 모든 금액 단위는 천원이며, 반올림하여 계산
- 부동산(建物・土地 등)의 경우 품명란에 소재지, 지번, 지목 등을 함께 기재
- 부동산의 경우 건물(建物)은 평가액, 토지(土地)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를 기재
- 부동산・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(보통)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
가. 총괄표

(2015.12.31.현재, 단위:천원)

채	산 구 분	품명 (소재지, 지번, 지목)	수 량	금액 (가액)	설립 당시액	취득원인
	현금(예금)		계좌			
	주식		주			
	채권					
	기타					
	[동산 소계]					
	건 물		m²			
기본	전(田)		m²			
재산	답(畓)		m²			
	대(垈)		m²			
	임야(林野)		m²			
	기타		m²			
	[부동산 소계]					
	기타					
	[합 계]					
	현금(예금)		계좌			
	주식		주			
보통	채권					
	부동산					
(운영)	기계장치					
재산						
	[합 계]					
	[총 계]					

나. 기본재산 증감내역

재 산 명	재 산 변 동 내 역		변경사유	변경 년월일	비고
	변동전	변동후	ਦਿ <i>જ</i> ′ Γ π	인경 인필된	H1 -14